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 등〉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4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3
2.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14
3.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 등	20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4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2.
- (3) 회 부 일 : 2025. 5.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고, 일반적으로 학대에 대한 저항강도와 의식이 낮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더욱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지원체계와 장애인 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심리, 청능, 감각, 운동 등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는 국가자격체계가 부재하여 서비스 질 편차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조기 중재가 필수적이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의료인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놀이재활·미술재활·음악재활 등 비국가자격 분야 치료에 대해 전액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 중재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영역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59조의20 및 제72조의4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 개정안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아동 지원 시책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②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의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 상호 통지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장애아동에 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며, ③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조치에 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59조의4제3항, 제59조의7제6항, 제59조의10, 제59조의20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신 설>

④ ~ ⑧ (생 략)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 ⑦ (생 략)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
한 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
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장
애인권익옹호기관은 수사기관
에, 수사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장
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
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에도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
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
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
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⑨ 제8항-----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6. (생략)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_____.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 이 경우 장
아아동에 대한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피해장애아동-----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0(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

	<u>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장애아동은 발달 특성상 자신의 피해 상황을 인지하거나 외부에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기 발견과 관계 기관 간 연계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을 고려한 학대 대응 절차와 체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현장 대응기관이 피해자를 장애아동으로 인지하였음에도 즉각적인 정보 공유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절차와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¹⁾²⁾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아동 등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신고접수부터 조사, 사례 판단·관리, 통계 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중 단계별 조사 협조 체계 >

단계	기 존	개 선
신고접수	112(아동학대신고)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 접수, 정보 공유 미흡	신고 후 상호 통보하여 재신고·동일신고 여부 확인
조사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조사 (경찰·지자체/옹호기관)	상호 협조를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
사례 판단·관리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아보전/옹호기관)	상호 인력 지원 (아동 전문가, 장애 전문가)
통계 관리	기관별 통계 관리	통계 공유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2023년에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³⁾을 마련하여, 장애아동 학대사건의 경우는

1) 김아름, 박은영, & 김재선. (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2) 원혜옥, 강정은, 마한열, & 김재선. (2022).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조치 등 주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내부 편람으로, 아동학대의 은폐·반복·심화 가능성이 높고 발견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 시 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나 경찰 수사에 대비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어 동 지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음.

(신고접수)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 후 상호 통보 → (학대조사) 사안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사전협조를 거쳐 경찰, 상호기관 간 공동 조사 → (학대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각 학대 여부를 판단하되, 기관 간 협의 → (사례관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로 판단한 경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로 판단한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순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아동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 강구 의무 및 장애인·장애아동학대 사건 등의 신고접수 또는 현장조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통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장애아동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명확히 구축함으로써,

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접수 및 현장 혼선을 줄이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체계화하여 피해장애아동의 조기 발견, 신속 대응, 회복 지원 등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관련,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아동 지원 정책 강구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9조⁴⁾는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등 장애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더불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어, 장애아동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⁵⁾

따라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을 ‘장애아동’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학대’ 등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경우 통지의 범위 및 용어 사용 관련,

- 4)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다만, 제2항에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기반한 조항으로 보임.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59조의4제3항 후단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를 받으면,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 모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59조의7제6항에서는 현장 출동 시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 중 하나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통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 대응 및 정보 공유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지 범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고접수 시 통지는 현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상 수사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단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상호 통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연계, 경찰 통지 범위 조정 등 통지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에서는 모두 사법경찰관리가 학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개정안에서 사용된 ‘통지’를 ‘통보’로 수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⁶⁾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다만, ‘통지’는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 ‘통보’는 “통지하여 보고함”으로 정의되고 있어,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두 용어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법률용어로 사용할 경우에도 용어 선택에 따른 실질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셋째, 장애인학대현장에서의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59조의7제6항 관련,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현장에 출동한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접수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정안 제59조의4제3항), 내용상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특히, 현행법 제59조의7제1항7)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동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어느 기관이 통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불명확하여 그 책임소재에 관한 혼선이 우려됨.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통지 주체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59조의7제6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넷째,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59조의20) 관련, 개정안에서는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서는 이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및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별도로 유사한 협력체계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기관 간 협력 주체 및 조정 권한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히, 현행법 제59조의11에 따른 협력체계는 ‘장애인학대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 개정안은 ‘피해장애아동’이라는 특정 대상군에 국한되는 협력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의 적용 범위, 우선 적용 관계, 협력체계 구축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를 별도 법률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771호)⁸⁾이 심사 중에 있으며,

동 제정안에서도 장애인학대범죄 인지 시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과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심사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장애인학대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의 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공, 인력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현장출동) ①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사법경찰관이나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동 제정안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4.30.)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마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59조의4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u>알게 된 때</u> 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u>알게 된 경우</u> 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 <u>알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u> ----- ----- ----- ----- ----- ② ----- ----- ----- ----- <u>알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u>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등’ 이라 함)를 알게 된 사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등 일정 범위 직무 관련자들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학대등에 대한 신고인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가목¹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¹¹⁾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편,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장애인학대등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¹²⁾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되는 행위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355. 「장애인복지법」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등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등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현장 실무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2023년 5,497건으로,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0%), 일반 사례는 2,528건(46.0%)임.¹³⁾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01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인지

장애인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 가능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대응

 장애인학대 인지시 신속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시 도움이 되는 정보

“ 신고자 관련 정보 ”	“ 피해자 관련 정보 ”	“ 학대 관련 정보 ”
☒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학대피해장애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 학대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 안전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 구체적 학대 내용 일시, 장소, 학대행위 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https://www.naapd.or.kr/data/edu>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를 신고 범위에

12)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1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 2023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771호)에서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신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4조(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도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한다.

-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045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과정에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학대등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3.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 등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발달재활사를 추가하고, 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국가시험 실시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발달재활사 협회 설립에 관한 법률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72조의4,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의4).

현행	개정안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u>장애인재활상담사</u> ,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 ----- ----- <u>장애인재활상담사</u> , <u>발달재활사</u> ----- ----- -----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제73</u>

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발달재활사”라 한다)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발달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발달재활사: 2급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
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발달재활사: 「고등교육
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발
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
위를 취득한 사람

③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의 구
체적인 분류 및 기준,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
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⑤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
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자격증
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기관의 범
위, 대학원·대학의 발달재활 관
련 학과와 발달재활사로서 이수
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
-----언어재활사, 장애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 1의3. (생략)

<신설>

2.·3. (생략)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1의3. (생략)

<신설>

인재활상담사 및 발달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실시하되, 발달재활사 국가시험은 제72조의4제2항14)에 따른 발달재활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자격취소)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7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3. (현행과 같음)

제77조(자격정지)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발달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

2. (생략) <u><신설></u>	<u>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u> 2. (현행과 같음) <u>제80조의4(한국발달재활사협회) ①</u> <u>발달재활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발달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발달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발달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한국발달재활사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한국발달재활사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영역 자격과 관련된 교육, 기준 개발, 자격 등록, 직무윤리 교육 등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u>
---	---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명시하고 있고,¹⁵⁾

14) 개정안 제73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72조의4제2항”은 응시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의 구체적인 분류와 관련한 제72조의4제3항을 인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15)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보조기 기사(제72조)와 언어재활사(제72조의2), 장애인재활상담사(제72조의3)의 경우는 이들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2: 현행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조문).

- 의지·보조기 기사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는 국가자격인데 비해,
- 점역·교정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것임.¹⁶⁾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현황>

(‘24년 말 기준)

구분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보유자 수	• 1,590명	• 1급: 5,566명 • 2급: 15,580명	• 1급: 3,830명 • 2급: 1,946명 • 3급: 90명	• 2,032명	• 1급: 218명 • 2급: 238명 • 3급: 1,244명
	합계: 1,590명	합계: 21,146명	합계: 5,866명	합계: 2,032명	합계: 1,700명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자격 성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기관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사)한국농아인 협회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6)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구분	의자보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주 활동 영역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자·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기관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언어재활을 실시하는 민간(사설)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수어통역센터, 종합병원 등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발달재활사를 포함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공 인력에 대해 전문 분야별로 국가시험을 실시하여,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발달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임(참고자료 3: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및 국가시험 실시의 기준이 되는 발달재활서비스 분야에 따른 자격 영역에 관해 현업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는 총 10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언어재활 서비스는 국가자격증을 교부 받은 ‘언

어재활사'가 제공하고, 나머지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등 9가지 영역은 각 서비스 영역별 교과목 이수자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고자료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영역별 서비스>

제공인력 유형		서비스 영역	인원(명) * 24.12.31 기준
언어재활사		언어재활	1급 5,566명 ·2급 15,580명
영역별 자격인정자 * 영역별로 자격을 인정함	청능재활	청능재활	327
	미술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4,579
	음악재활	음악재활	1,796
	행동발달재활	행동발달재활	790
	놀이심리재활	놀이심리재활	3,202
	재활심리	재활심리	646
	심리운동	심리운동	990
	감각발달재활	감각발달재활	4,159
	운동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652
	영역별 자격인정자 합계		17,141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개정안에서는 발달재활사 자격요건 중 학력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등의 취득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⁷⁾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 및 자격증 교부 등) ② 발달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이 경우 원격대학 졸업자 또는 학점은행제 등과 같은 평생학습과정 이수자 등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장애인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¹⁸⁾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는 응시자격으로 원격대학에서의 학위 취득도 인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

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발달재활사: 2급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발달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18)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관련, 최근 대법원에서 원격대학 졸업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2024두48268)한 이후, 이를 보완하여 원격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있었음.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2019. 12. 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참고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원격대학에서의 관련 과목 이수를 인정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언어재활사 해당)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 셋째,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재활사 교육, 자격 등록 등의 관련 사무를 한국발달재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장애인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는 각 협회가 보수교육을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자격 등록이나 그 외 자격 관련 사무 전반까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¹⁹⁾

19)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의 실시 대상,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각 협회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75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1.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5년 이상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2.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보조기 관련 학문·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언어재활사: 법 제80조의2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재활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따라서 민간 협회의 조직·인력·전문성 등 행정적 역량을 고려할 때, 자격 등록과 같은 고유 행정사무까지 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43호, 2024.12.27.)이 계류 중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관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 학대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낮고,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 노인 대상 학대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과 체계가 기(既) 마련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의 “의심”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보완을 위해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 등 관련)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체계화를 통해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10개의

영역별로 활동하고 있어, 이를 ‘발달재활사’라는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이를 대체하여 자격을 신설·운영하는 경우 언어재활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기존 수행인력과의 영역 및 서비스 내용이 중첩됨.

아울러, ‘발달재활사’는 아직 별도의 학제, 학회, 민간자격 등이 없어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공인력 교육, 제공기관 품질 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언어재활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

나. 경찰청

-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관련)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범죄 노출 위험이 높고 저항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 사건의 통지는 현행 「아동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고 출동 현장에서는 응급조치 및 수사 등 신속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함.

긴박한 현장에서 시·군·구에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은 현장 출동 및 응급조치 주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고,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시·군·구에 통보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입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관련) 안 제59조의4 제3항 관련, 현행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 통보가 강제될 경우, 중재 또는 보호지원 중심의 사건까지 불필요한 수사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2차 피해 및 과잉 수사 가능성도 존재함(실제로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사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고 지원만을 희망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따라서 모든 사건을 수사기관 또는 권익옹호기관에 의무 통보하기 보다는, 현행 제59조의14를 기반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중대한 사건에 한해 통보하고,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비동의한 사건은 정보 공유 중심의 협조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방안임.

안 제59조의7제6항 관련, ‘출동한 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경찰, 권익옹호기관, 응급의료인 등의 통지의무 주체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통지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현행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통지 및 보호 연계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안 제59조의10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지원을 수행하는 등 포괄적 관점에서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수행 중이므로, 장애아동만을 별도로 명시할 경우 일반적 책무 이행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안 제59조의20 관련, 현행법 제59조의11에서 이미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조체계 및 자료요청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존 조항을 중심으로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 기관 협력 매뉴얼 정비 등 비입법적 조치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관련) 신고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학대의심 상황에서 신속한 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학대라고 의심되지 않았다’는 신고의무자의 주관적 진술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판단할 권한 및 절차가 불명확하여 규정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의심할만한 상당한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보완 필요

라.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 등 관련

관계 기관	제출 의견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가자격제도를 위한 발달재활영역, 발달재활사의 직무, 교육과정 변경 등에 대한 연구 등의 신중한 검토 필요 - 협회 등 민간단체를 법에 직접 명시하기보다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
한국보건의료인	응시자격과 응시자격(관련학과 및 교과목) 심사 및 자격증 교부기관 명확화 필요

관계 기관	제출 의견
국가시험원	발달재활 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할 시에는 시험과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출제위원 위촉 및 출제장소 확보 등 시험 준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통 교육과정에 한해 국가시험 시행이 필요하며, 공통과목 도출을 위한 직무분석 및 시험평가분야 관련 연구 선행 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	- 발달재활사의 고유 업무, 전문성 범위가 불명확하며 기존 국가자격(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등)과의 역할 중복·직역 갈등 우려 - 학계·보건직역·당사자 공론화, 필요성 검증 후 단계적 제도화가 가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달재활사를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하고, 이를 관리할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본 개정안에 찬성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발달재활사 국가 자격 신설은 찬성하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에서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보험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 자격 신설 취지로는 맞지 않으며 이는 바우처 제도 강화 등 별도 제도 강화를 통해 해결 필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발달재활사 자격제도는 이미 국가자격 또는 전문자격체계를 통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질적인 전문 영역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직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전문성과 정체성이 모호하므로, 자격의 신뢰도 저하, 직역 간 충돌, 현장 적용 시 혼선 및 수요자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제시된 발달재활사의 개념, 범위, 기능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선행적으로 관련 개념 정립과 기준 마련이 필요

관계 기관	제출 의견
	• 자격 도입 시 구체적인 자격기준,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발달재활사를 신설하는 것을 찬성하며 이에 따라 발달재활사의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
대한의사협회	•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발달재활사의 재활서비스는 본래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감독 하에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로, 이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발달재활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이 신설된다면,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을 열어주어, 「의료법」 등 위반 소지 및 비자격자의 의료행위 허용 등의 우려가 있어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아동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구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4.12. 기준)	아동 권리 보장원 (’25.2. 기준)	아동보호 전문기관 (’24.12. 기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 무원 (’24.12. 기준)
기관 수	20개소(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	1개소	98개소	229개 시·군·구
종사자 수	중앙: 6인, 지역: 각 5인(정원) * 현원은 추가인력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93인	각 14인(정원) * 현원은 추가인력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885명
법률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2조제6항 등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6조 등	아동복지법 제22조 등
관련 예산	3,172백만원 (중앙: 723백만원) (지역: 2,448백만원)	28,038백만원	46,263백만원	-
주요 업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실태조사, 교육·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생산 등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 정책 수립 지원 등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 관 지원,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피해아동 등 상담·치료 및 교육,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유관기관 연계, 가정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등(사례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조사, 사례 판단, 아동학대 정보 처리,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현행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 ②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삭제

-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3: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 장애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최대 2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 (서비스 영역)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행동발달, 놀이심리, 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 운동발달 등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제공기관에서 1:1 서비스 제공 원칙
 -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 (제공기관) 민간(시설)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2,668개소('24년 말 기준)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88,415	94,204	99,857	127,032	138,288
이용인원	78,782	84,411	91,044	97,469	103,523

* 국비(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등>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하생략.

[별표 1]

가. 배치기준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현재 언어재활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